

# 규정 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RB, ACA, ACF, ACF-RA, ACH, COC-RA, GAA, GKA-RA, JHF, JHF-RA  
 책임 맡은 사무실: 수석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 직장에서의 괴롭힘, 왕따, 불링

### I. 목적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구조적 존중의 문화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 규정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을 예방, 조사, 교정하는 구조를 명시한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AH,, *직장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 (Workplace Bullying)* 를 적용하여 불링 예방, 인지, 신고, 조사,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책정합니다.

### II. 배경

교육위원회는 업무환경,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링/왕따/괴롭힘은 *문화 존중협약(Culture of Respect Compact)*<sup>1</sup>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며, 교육위원회의 주요 가치로부터의 구조적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직원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단체 안에서의 행동에서 이해, 존중, 긍정적인 상호관계에 이바지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 III. 정의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이란 반복적, 고의적이며 상처를 주는 학대 또는 잘못된 대우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한 명 이상의 직원이 한 명의 직원이나 한 명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이에는,

A.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서 명시된 실제 또는 예상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행해지거나,

<sup>1</sup>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와 Montgomery County Education Association,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Local 500, Montgomery County Association of Administrators and Principals 간의 존중의 문화 협약(Culture of Respect Compact) (이후로 존중의 문화협약(Culture of Respect Compact)로 표기)

- B. 위협 또는 협박할 경우. 이와같은 일이 직장과 또는 고용 기간 중에 이루어질 경우.
- C.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하여 개인의 업무환경에서의 상태를 바꾸게 할 경우.

이 행동들은 직접 개인에게 이루어지거나 전자로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모든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MCPS 소유지 내와 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과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은 수퍼바이저가 직장부하에게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끼리 또는 직장 부하가 수퍼바이저에게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불링의 예로는 굴욕, 위협, 업무 방해 행위가 포함됩니다.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은 개인의 신체 또는 정신적 안녕이나 근무성적, 승진의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IV. 행정절차

##### A. 인식과 예방

1. MCPS는 직장 내에서의 불링, 위협, 희롱의 만연함,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예방 방법과 정보활동을 통해 MCPS의 직원 *행동지침(Employee Code of Conduct)*과 *e 존중의 문화협약(Culture of Respect Compact)*을 지지하여 전문적이며 동료 간의 존중하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2. MCPS는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을 인지, 예방, 개재, 수정에 관해 직원과 일반에게 자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3. 직장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은 예방 정보, 전문적 개발과 트레이닝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구 전체 트레이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직장에서의 불링/왕따의 인식, 예방, 개재, 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에 관한 해당 법과 정책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4. 필요에 따라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OHRD)와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OEELR)가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5. 직원은 OEELR를 통한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에 관련된 문제를 알리기 위한 지도, 지지 및/또는 도움 찾기를 장려합니다.

## B. 신고

1. MCPS Regulation GKA-RA, *Administrative Complaint*와 일치하여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을 목격한 MCPS 직원은 누구나 즉시 수퍼바이저 또는 적절한 직장 관리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OEELR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DCI)는 직원과 수퍼바이저를 위한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 신고, 조사, 후속절차를 알리는 지침을 필요에 따라 개발할 예정입니다.
2. 이의제기가 이의 제기자의 수퍼바이저나 이의 제기자의 위치에 관련된 권한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직원은 DCI에 이의제기를 제출합니다. 신고는 MCPS Regulation GKA-RA, *Administrative Complaint*에 정해진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의제기가 내부(local level)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MCPS Regulation GKA-RA, *Administrative Complaint*에 명시된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DCI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직장 내에서의 불링/왕따/괴롭힘 신고를 한 직원 또는 조사에 참여한 MCPS 직원에게의 위협, 희롱, 보복/양갈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에 따라, 이에 따른 결과로 처벌이 보복 또는 양갈음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전한 직원에게 이에 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C. 개선 조치

개선과 향상 조치는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와 적절한 개선 조치 동의 또는 MCPS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D. 직원 외의 불링/왕따/괴롭힘

1. 직원은 전문적이며 도움을 제공하는 태도로 일반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은 직장에서의 소통과 관계에서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직원의 일반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가 직장 불링 수준이 될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이를 알리기를 권장합니다. 수퍼바이저는 직원을 지지하여 MCPS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직장 불링 문제의 해결을 도와야 합니다. 수퍼바이저는 직원이 아닌 사람과의 상호관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추가 도움을 얻기 위해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OSSI) 또는 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MCPS는 이 행동들은 직접 개인에게 이루어지거나 전자로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모든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MCPS 소유지 내와 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과 의사소통이 포함됩니다.

Maryland law, MCPS Regulation ABA-RB, *School Visitors*, MCPS Regulation COC-RA, *Trespassing or Willful Disturbance on MCPS Property*의 경우, 필요하다면, MCPS 직원이 아닌 사람의 직장에서의 불링 문제의 경우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다른 해결법

이 규정에서의 내용은 다른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카운티, 주, 연방 법 또는 규정 하에 제공하는 권리, 권리의 실현 방법, 변상 또는 행동의 이유를 제한하거나 저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온전한 권리, 권한 또는 MCPS의 해당하는 법, 규칙, 절차를 제어, 감독, 관리하는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는 권리나 결정권을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 *Culture of Respect Compact;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Employee Code of Conduct;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6-901 through §6-906, and §26-101*

규정 변경사: 새규정 2016년 6월 29일, 실질적 재검토일 2017년 7월 24일.